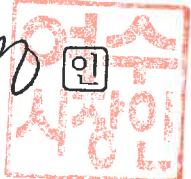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 월 31 일

여수시장 2023.10.31


여수시 조례 제1987호

붙임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안전분석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 이란 작물별 농약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 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여수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시료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통지 등) ① 시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시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시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7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여수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여수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여수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

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여수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2를 감경 할 수 있다.

제12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제13조(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 뢰 인	생 산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연락처
	수 거 원	성명		연락처
		기관명 (소속)		
의 뢰 내 역	채취장소 (재배필지)	상세주소(지번)		
	시료명 (재배작물·토양)		채취일자	
	의뢰목적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GAP <input type="checkbox"/> 로컬푸드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뢰항목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팩스 : ※우편 선택시 1~2주 후 수령		
	수수료			

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통지서

발급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연락처	
	채취장소 (재배필지)			
시료명		의뢰목적		
의뢰항목		인증구분		
분석 결과	No.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의뢰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급내용(시료명)				
용도		신청부수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수수료
무료